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 동 길 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재난 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등에게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최

소화 의무를 명시하여 그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재난의 경우 이른바 ‘골든타임’ 내의 초기 대응이 피해 최소화 및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함을 감안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재난 발생 시 입주민의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나, 기존 체계는 자연재난 위주의 수동적 알림에 그쳐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민의 65%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입주민의 재난정보 수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미수신 시 즉각적인 재알림을 통해 모든 입주민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통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재난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둘째, 시장 및 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항)

셋째,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입주자의 재난정보 수신상태 인지와 재알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운영을 권고하고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

아무쪼록 개정된 조례안이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화재위험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이어져 신뢰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